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9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강인구

피고, 상고인 A

판 결 선 고 2023. 9. 21.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713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16. B와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4. 7. 14.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B가 주식회사 K(이하 ‘K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나. B는 2021. 5. 4.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소재 G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B는 2021. 7. 10. K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K은행은 2021. 7. 28. 원고에게 대출원금 연체의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1. 3. B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K은행에 보증원금과 이자 60,304,8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인 B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전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M이라는 상호로 남편 N과 함께 콩 등을 납품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B는 O이라는 상호로 콩나물, 숙주나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B에게 콩을 납품하는 관계로 알게 되었으며, B와 피고는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다.

- 2) 피고는 2021. 4.경 B로부터 운영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 동서인 D의 자금으로 2021. 4. 19. 20,000,000원, 2021. 4. 23. 6,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21. 5. 3. 원금 전액과 함께 이자 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 3) 피고는 2021. 4.경 B에 대하여 콩 외상대금 채권 13,50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2021. 5. 3. B에게 26,000,000원을 변제기 2021. 5. 14., 이자 1,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어 2021. 5. 4. B에게 30,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각 대여금은 피고 본인이 직접 또는 N의 지인인 P를 통하여 B 또는 B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 4) B와 피고는 2021. 5. 4. 외상대금과 대여금을 모두 합쳐 피고가 B에게 70,000,000원(= 26,000,000원 + 30,500,000원 + 13,500,000원)을 변제기 2022. 5. 4.,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채권을 정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 채권최고액 196,350,000원, 근저당권설정일 2017. 7. 31.로 된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설정일 2019. 6. 25.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6)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021. 5. 4. 기준으로 350,000,000원 내지 400,000,000원 정도였으므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316,350,000원(= 196,350,000원 + 120,000,000원)을 공제할 경우에도 담보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위 두 건의 근저당권 이외에 가압류 등 담보가치를 의심할만한 다른 등기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 7) 피고는 B에게 2021. 6. 4.부터 이자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는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1. 7. 경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겼으니 빨리 이자를 보낼 것을 독촉하였으나 B가 이자를 변제하지 않자 결국 2021.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 다. 위와 같은 B와 피고의 관계, B와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B와 피고 등의 계좌거래내역, 피고가 이자지급을 독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른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선의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환